

# 모델 05

## 순원가법 활용을 통한 FTA 활용 모델(자동차)

### 01 |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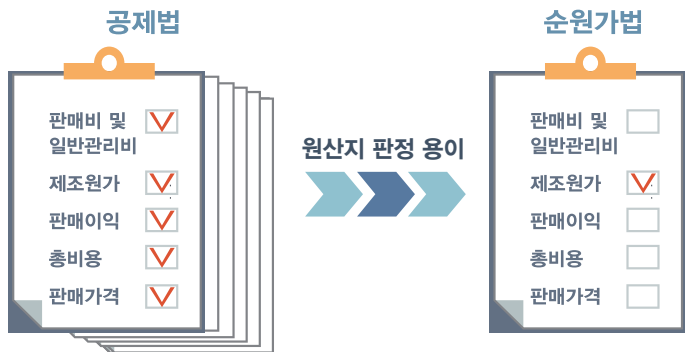
- 한-미 FTA에서 최초로 소개된 자동차의 순원가법은 NAFTA에서 도입되어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원산지규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
  -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생소한 규정으로 현재까지 활용하는 기업이 없음

$$* \text{순원가법 부가가치 비율} = \frac{\text{순원가} - \text{비원산지재료비}}{\text{순원가}} \times 100 > 00\%$$

### 02 | 비즈니스 모델

- 순원가법 적극 활용 모델
  - 순원가의 산정은 제품가격과 이윤 및 공제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, 제조원가에서 산정이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공제법보다 간단
  - 또한 산정값의 변동 요인이 적어 정확도가 높으므로 한-미 FTA 자동차 수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
#### 순원가법 활용 모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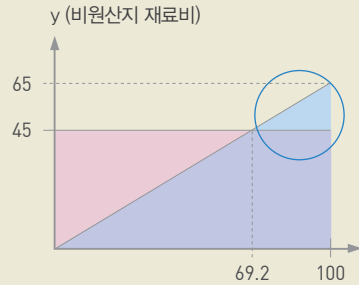
- (유의사항) 비원산지재료 사용면에서는, 제품가격대비 순원가의 비중이 69.2% 이상인 경우 순원가법이 공제법 보다 비원산지재료 허용치가 높아 유리

### 부가가치계산 방법과 비원산지재료비의 상관관계 분석

- 한-미 FTA
  - 공제법 55% 이상
  - 순원가법 35% 이상
  - 제품가격 : 100원 가정

#### 〈비원산지재료 허용범위〉

- 공제법 :  $(100-y)100 > 55 \rightarrow y < 45$
- 순원가법 :  $(x-y)/x > 35 \rightarrow y < 0.65x$



〈공제법〉 부가가치 비율 =  $\frac{\text{제품가격} - \text{비원산지재료비}}{\text{제품가격}} \times 100 > 55\%$

〈순원가법〉 부가가치 비율 =  $\frac{\text{순원가} - \text{비원산지재료비}}{\text{순원가}} \times 100 > 35\%$

## 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자동차산업 분야 및 자동차 부품 산업
  - 제품가격 산정보다 순원가 산정이 실무적으로 간편하여 FTA 활용이 용이하며, 정확도가 높아 원산지 검증 대응에도 유리